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20,165,150	18,604,955
일반회계	550,007,619	16,500,229
특별회계	70,157,531	2,104,726
공기업특별회계	34,354,396	1,030,63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354,396	1,030,632
기타특별회계	35,803,135	1,074,094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15,920	6,478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1,415,411	42,46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92,274	20,768
자활기금특별회계	2,236,477	67,094
수질개선특별회계	24,371,427	731,14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661,618	199,84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4,428	2,233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35,580	4,06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000,000천원으로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499,80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